

# 공 고

## ●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245호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,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3월 7일

국토교통부장관

건설신기술 지정 신청

### 1. 기술개발자

- 가. 성명 또는 법인명(대표자 성명) : ①천지건설(주)(김혜정)  
나. 전화번호 : ①031-417-5339

### 2. 명칭 : 건공화 펌프를 이용하여 수공발파 차단 및 ANFO로 진동을 경감한 건공화발파공법

### 3. 내용요약

<분야>

토목 > 토질 및 기초 > 지반 굴착

<기술의 내용>

신청기술은 건공화펌프로 모든 수공을 건공으로 전환하여 법률이 규제하는 수공발파 차단 및 대규모발파 불능을 차단하고, 수공해결이 전제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 ANFO제원을 에멀젼제원(TYPE II~TYPE V)에 대체 적용하여 진동을 경감한 발파공법이다

<범위>

국내 발파기술이 사용하는 발파공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물(수공)을 신청 “건공화 펌프”로 완전 배수 처리하여 건공 발파체계를 구축하고, 진동제어 목적이 포함된 표준 에멀젼제원(TYPE II~TYPE V) 각 공법에 대하여 신청 “ANFO제원”을 대체 적용하여 진동을 제어하는 기술

### 4.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(전화: 031-389-6475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※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

- 가.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 
나.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

- 1)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·도용한 경우
  - 2)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
  - 3)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- 다. ‘나’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